#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설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

2019. 1.



# 목 차

Ι.	법·제도 변동 개괄	1
п.	법·제도 변동의 세부내용	·· 4
ш.	안전기준	14
IV.	표시기준	22
IV.	기타	33

# 법·제도 변동 개괄

-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전환기
  - (법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9.1.1.부터「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이하 "법"이라 함)」
  -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 과정이 순조롭도록 법 부칙에** 경과규정 반영
    - 부칙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 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 참고로 **법 일부 개정 예정**(「화평법」제34조에 따라 <u>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한 날부터 3년까지는</u>)
  - (관리대상)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23품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5품목)
    - ※ (위임 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19.1월 중순 시행예정, 이하 "고시"라 함)」

#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5품목)

- □ 고시 '[별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종전 위해우려제품, 26품목) 세정제 등 23품목 + 3품목\*
    - \* 위해우려제품 일부(3)를 제품의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分化(예: 세정제 → 세정제, 제거제)
  - (신규 지정품목, 2품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雪) 스프레이
    - 『 차량용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처리된 살생물물질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기준 不在(MBC 등, '16.6월)
  - (이관 의약외품, 7품목) 추후 살생물제 승인 시까지 승인대상 제품(법 제10조제 5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지정하여 관리
    - \* 이관 의약외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안전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월) 후속조치

분류	품	4		품목	분류
	가. 세정제	나. 합성세제	1. 세정제	2. 제거제	세정제품
1. 세제류	다. 표백제 마. 자동차용 워셔액	라. 섬유유연제	▲ 1. 세탁세제 3. 섬유유연제	2. 표백제	세탁제품
	가. 코팅제 다. 김서림 방지제	나. 방청제라. 접착제	1. 광택 코팅제 3. 녹 방지제	2. 특수목적코팅제 4. 다림질보조제	코팅제품
	마, 다림질 보조제	바. 틈새충진제	1. 접착제	2. 접합제	접착·접합제품
3. 방향제류	가. 방향제	나. 탈취제	1. 방향제	2. 탈취제	방향·탈취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염색.도색제품
~_ ~	가. 물체 탈.염색제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 전용 제품
4. 염료, 염색류	나. 문신용 염료 다. 인쇄용 잉크·토너		1.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L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미용제품
	가. 소독제		<ol> <li>살균제</li> <li>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li> <li>기타 방역용 소독제제</li> </ol>	2. 살조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식약처에서 이관	살균제품
5. 살생물제품류	다. 방부제 라. 살조제 <b>추</b> 록	추후 살생물제품으로	1. 기피제 3.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구제제품
		관리	1. 목재용 방부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규	보존 · 보존처리제품
6. 기타류	가. 양초	나. 습기제거제	1. 초 3. 인공 눈 스프레이 <b>신규</b>	살생물처리제품으로 2. 습기제거제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성 기타

※ 일부 품목의 명칭변경 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과의 조화(소독제 → 살균제,
 방충제 → 기피제), △표현 순화(일본식 조어인 '방청제' → '녹방지제') 등

# $\blacksquare$

# 법·제도 변동의 세부내용

- □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변경
  - (법)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위주(법 제3조제3호)

《 생활화학제품 정의규정의 변화 및 효과 》



('19.1.1 시행) 화학제품안전법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이하생략~ 공장(工場)의 제조라인,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등 外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

- (취지) 병원 화장실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사용되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필요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함

- ㅇ (고시) "일상적 생활공간"의 정의 규정(고시 제2조제4호) 신설
- 다만, 필요한 영역에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위해 특례 규정 마련
  - 부칙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u>안전기준</u>과 제6조에 따른 <u>표시기준</u>은 <u>2020년 7월 1일</u>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 '20.7.1. 이전에 실태조사·노출평가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
- □ 안전 확인의 주체 구체화
  - ㅇ (고시)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고시 제2조제5호) 신설
  - (취지) 종전 법령은 OEM·ODM<sup>\*</sup>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수탁자에게 책임이** 쏠림 → 이익·책임의 형평성 제고 필요
    -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 제조방식
    -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개발 제조방식

- 고시 제2조제5호 <u>"확인을 받으려는 자"</u>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 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 □ (가호) 하도급(하청)에 가까운 OEM의 경우, 위탁자가 안전확인, 신고 및 표시 이행
- (나호) 개발력을 갖춘 제조자의 필요와 유통사의 이해(利害)가 함께 작용되는 ODM의 경우, 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 및 표시\* 이행
  - \* 문제시 신속한 회수를 위해 ODM 주문·판매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도 제조자의 정보와 함께 표시해야 함(표시기준)
- □ **종전**「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유래한 "파생모델제품" 개념 폐기
  - \* 표본적으로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실시한 효력(자가검사번호)이 같은 용도·제형의 제품들에도 미친다고 간주, 자가검사번호 공유 허용  $\rightarrow$  대신 문제시 자가검사번호 공유 제품 전체를 회수 조치
  - (문제점) 사업자의 임의판단으로 공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소비자 혼란
     및 별도의 신고제도가 없어 환경당국도 제품 현황 파악 곤란









- (법) 안전기준 적합 확인 이후 신고제도 도입(법 제10조제4항)
- (고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을 기반으로 개량되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은 받지 않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
  - ※ 다만,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의 경우, [별표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은 확인
  - 고시 제2조제7호 <u>"파생제품"</u>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u>대표제품</u>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 고시 제5조(안전기준)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초로 또는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별표7]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서식에 파생제품명, 사진, 표시견본 제출
  - ☞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후 법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예정)
- 다만, 종전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고시 부칙에 경과규정 반영
  - 부칙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자가검사 갱신을 위해 **현재 시험·분석 중인 종전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경과규정**(고시 부칙)
  -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시험·분석 → 제정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은 '19.3.1.부터 적용
    - 고시 부칙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u>안전기준</u>과 제6조에 따른 <u>표시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u>되며, <u>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u>

- □ 신규 관리품목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고시 부칙)
  - ㅇ (취지) 제도 이행에 필요한 현실적 준비기간 고려
  - ('19.7.1.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 △인공 눈(雪) 스프레이,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살균제(공기 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 고시 부칙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4. 인공 눈 스프레이
      -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 《 살균제, 기피제, 초(Candle) 3품목의 관리대상 확대 현황》

구분	종전	제정
품목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용도 >	< 용도 >
살균제*	배수구용, 에어컨용, 항균용, 염소계소독제, 기타 등	o (일반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 (특수목적용)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 용도 >	< 용도 >
기피제*	쌀벌레, 좀벌레 대상 식품용, 의류용, 화장실용, 기타 등	쌀벌레·용, 좀벌레용, <b>날벌레용</b>
	< 적용범위 >	< 적용범위 >
초 (Candle)	파라핀 또는 파라핀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파라핀 또는 파라핀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 제를 혼합

- □ 이관 의약외품(7품목\*)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규정(고시 부칙)
  -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 방지·기피·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약사법」에 따라 기(旣) 품목 허가·신고된 경우, '19.12.31.까지 제조·수입한 제품은 종전의「약사법」에 따른 표시로 갈음
    - 고시 부칙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u>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u>하였거나 <u>수입한 제품</u>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 □ 신규 관리물질 중 일부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 **(배경)**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16~'17, 환경부) 결과, 19,045개 제품(79.4%)에서 733종의 살생물물질 사용을 확인
  - 인체 노출·영향이 우려되는 품목별로 **사용물질함량기준\* 추가** 및 **기준치 강화** 필요
    - \* 제품 제조의 全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확인 필요

○ (고시) 사용물질함량기준이 신설·강화된 세정제 등 품목의 경우, <u>신설·강화</u>된 해당 기준은 '20.1.1 이후 제조·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고시 부칙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중 I.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II.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 사용물질함량기준 신설·강화 품목 현황 》

품목	사용물질함량기준
세정제	에틸렌글리콜 등 3종 기준치 강화, 펜에틸알코올 등 14종 추가
제거제	IPBC 등 2종 기준치 강화, 트리에탄올아민 등 10종 추가
세탁세제	머스크 케톤 등 9종 신설
섬유유연제	개미산 등 5종 신설
광택코팅제	에틸알코올 등 30종 신설
특수목적코팅제	에틸알코올 등 7종 신설
녹 방지제	2-프로판올 등 8종 신설
접착제	산화에틸렌 등 3종 신설
방향제	트리에탄올아민 등 5종 추가
탈취제	염산 등 3종 강화, 트리에탄올아민 등 7종 추가
물체 염색제	2-부톡시에탄올 등 4종 신설
미용 접착제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3종 신설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추가
  - (법)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법 제10조제2항)
  - ㅇ (고시) 사업자에 不利하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도록 규정 반영
    - 고시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u>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u>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u>유효기간</u>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Ⅲ 안전기준

# 1. 체계

- ① 고시 [별표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① (I) 공통기준
    -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5종(PHMG, PGH, PHMB, MIT, CMIT)
    -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등)
  - ② (Ⅱ) 품목별 안전기준
    - 1) 적용범위 ※他법 관리대상 등 적용제외 대상은 주의
    - 2) 함유금지물질

- □ (검출허용한도 설정) 4대 중금속(비소, 납, 수은, 카드뮴) 등 물질에 설정
- 고시 제5조(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u>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u>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u>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u>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확약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의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 고시 [별표7]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참고
  - 『 위해우려제품에 금지된 **사용제한물질**의 제품內 함유여부도 제품출시 전 시험·분석 의무화를 통해 확인 필요(김삼화 의원, '18.4월)

# 3) 함량제한물질

- (1) 함유물질함량기준 또는 방출량기준(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한함)
  - ※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제품 출시 前 확인 필요
- (2) 사용물질함량기준
  - ※ 제품 제조의 全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확인 필요
  - ※ <u>사용하지 않은 경우</u>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u>비사용 확약서 제출</u>

# 4)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 종전「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목록 外 물질의 사용에 대한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旣 허용된 물질 등
-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경우, 방출량기준 外 물질을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 마련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장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u>다만, 표2에 해당되지 않는 2)와 3)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u>
  - 1) 표2에 제시된 물질. 단. 물질별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 2) 법 제12조에 따라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 5) 안전요구사항 ※ 차량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에 한함

# 6) 사용가능 주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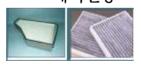
\* 종전「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방부제에 한함

### 《 참고: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관리 》

- (적용범위)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하는 필터로서 필터의 표면 또는 내부를 살생물물질 처리한 필터에 한함
  - ※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에 사용되는 공조용 필터는 적용 제외











- (안전기준) 처리된 살생물물질이 탈착・방출될 것이라는 가정下 특정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전·후 살생물물질의 함량 차이를 평가하여 기준 설정
  - 다만,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진동'이 함께 작용되어 물질 탈착이 많은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잣대로 설정한 안전기준을 공통 적용

- (시험방법) 운전유량 조절 가능한 별도의 실험장비에 공기정화용 필터를 장착하여 일정조건\* 운전하고, 전·후 필터의 살생물물질 함량차이 측정
  - \* 운전유량을 10㎡/min으로 하여 96시간 연속 가동
    - ※ 실험환경 외 외부요인이 필터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온·항습 조건 등 설정

- ② 고시 [별표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 ㅇ (달라진 점) 캡슐형 세탁세제의 水溶性 포장재에 대한 누수, 강도 기준 마련
    - ※ 필름 재질이 침에 녹으면서 부상을 입거나, 손에 쥐었을 때 쉽게 터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필요
    - (누수 기준) 20°C의 물에서 30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함
    - **(강도 기준)** 표준시험조건[온도 (23±2)℃, 상대습도 (50±5)%] 下에서 최소한 300 N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함

# ③ 고시 [별표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 마개를 열 때 누르거나, 당기거나, 홈을 맞춘 후 돌리는 방식 등
  - ※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해 적용
- (문제점) '05년 어린이보호포장 제도 도입(산업부, 舊「품공법」) 이후 제도 개선 없이 '15년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도·현실 간 괴리가 큼
  - 종전 규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취지를 달성하는데 불충분
    - ※ 예) '05년 당시에는 액상형 제품이 주류(mainstream)였기에 종전 규정도 액상형에 한정
      - → 최근 4년간('14~'17)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중 병원치료를 유발한 47건은 액상형이 아닌 에멀젼형(22건), 가루형(18건), 캡슐형(7건) (한국소비자원)
- 강화·보완된 주요 내용
  - (① 관리대상 확대) 종전 규정은 세정제, 코팅제, 순간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품목에 한정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액상형에 국한
    - ⇒ 적용대상을 특정 품목·제형으로 한정하지는 않음(단, 적용 제외기준도 있음)

### 《 주요국의 어린이보호포장 관리대상 비교 》

구분	韓	EU	캐나다	美
분류기준	제품 품목(종류)	화학물질의 유해성	화학물질의 유해성	제품 품목(종류)
품목	5품목 한정	모든 소비자 제품	모든 소비자 제품	15품목 및 화학물질
제형	액상형 한정	모든 제형	모든 제형	대상 제형 각각 특정

- (① 함유물질 적용기준 보완) 종전 규정은 미국과 비슷하게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함량 여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
  - ⇒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기준 13종(强부식성 등) 및 흡인 유해성\*물질 5개군으로 정비 및 내실화
    - \* 흡인(吸引)유해성: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또는 구토로 인하여 기관지 및 더 깊은 호흡 기관(呼吸器管)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등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것
      - ※ 기업 스스로가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특정 분류에 해당하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시키는 EU 모델이 보다 바람직하나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
- (© 적용 제외기준 보완) 종전 규정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잦은 에멀젼(emulsion) 제품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에 포함하는 등 타당성 부족
  - ⇒ '실제 중량 15kg 이상의 제품' 등 6개 구분에 대해 적용을 제외

고시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Ⅲ.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방향제, 초 등)
  - (②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기준 보완) 종전 규정은 재봉함 가능 포장만 시험기준 규정
    - ⇒ 국외 제도를 참고하여 **재봉함 불가능 포장**도 시험기준 추가
- ㅇ 새로운 법률관계로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고시 부칙에 적용례 반영
  - 어린이보포호장 안전기준은 '20.1.1. 이후 제조·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고시 부칙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u>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u>하거나 <u>수입하는 제품부터</u>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Ⅳ 표시기준

### 《 표시도안 비교(예시)》

### 위해우려제품(左)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右)

- •품명일반생활화학제품(세정제)
- 종 류 유리용, 리필형(액체형)
- ●모델명○○○
- 생산년월 ○○○○년 ○○월
- 생산국명, 생산회사 미국, ○○○
- 수입회사명 ○○○
- 수입회사 주소 ○○시 ○○구 ○○동
- 수입회사 전화번호 ○○-○○○-○○○
- 중 량 300g
- **액 성** 알칼리성
- 성 분 계면활성제 5%미만[아민 옥시드계, 고급알코올계(음이온)], 염소계표백제, 산도조절제, 향료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 (세제/살균·소독제, 0.2%, "독성 있음" (제품 겉면 표시)

- 사용상 주의사항
-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2. 반드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시고,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3. 액체형 제품으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 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그림문자

신고번호: 0000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어는점: 중량·용량·매수: 액성: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

판매자: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주요물질: <u>신호어</u>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1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 1. 종전규정比 달라진 점

규정	현행	제정
구분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מורים	ㅇ 별도의 마크 표시가 없음	<ul> <li>소비자 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마크표시 도입</li> </ul>
신고마크 표시도입	→ 소비자가 안전여부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움	(상징) 화학구조식 (함의) 돋보기+체크(√)로 꼼꼼한 확인의 뜻
그림기호	ㅇ 깨알 같은 글자로 정보 전달	<ul><li>소비자 행동심리 고려, 직관적 그림기호 표시 도입</li></ul>
표시도입 (권장사항)	- 피로감 유발 및 '사용상 주의사항'이 간과되는 역효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b>불확정개념 용어</b> 일부 존재	ㅇ 명확성 제고
	- '최소단위 포장', '보기 쉬운 곳' 등	- <b>소비자 행동패턴</b> 우선 고려, '주표시면 <sup>*</sup> ' 용어 도입 등
규제개선	ㅇ 과도한 표시 규제가 일부 존재	*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 구매시 통상적 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용량-반응'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극미량의 물질이 함유되더라도 <b>"독성있음" 경고</b> 文句 표시	ㅇ "독성있음" 경고文句 폐지

규정 구분	현행 (위해우려제품)	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ul><li>소비자 정보제공 우선 고려, 물질명(名) 표시를 체계화</li></ul>
사용물질	○ <b>'깜깜이 표시'비판</b> 에 수시로 표시기준 추가	-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로 구분하여 표시
표시	→ 소비자, 산업계 등 <b>이해관계자 모두가</b> 불만	* 최대함량을 구성하는 대표물질 및 제품의 주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물질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품목 확대(세탁 세제 등 4개 품목 → 全품목)

### 2. 새로운 표시기준의 체계

Ⅱ 고시 [별표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① I. 공통 표시사항

1.품목, 2.제품명, 3.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4.제형, 5.제조연월, 6.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7.중량·용량·매수, 8.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9.액성(세정제품 및 세탁 제품에 한함), 10.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11.효과·효능(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12.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13.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14.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15.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16.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sup>(2)</sup>, 17.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sup>(2)</sup>, 18.신호어 및 그림문자<sup>(2)</sup>, 19.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20.사용상 주의사항, 21.응급처치, 22.안전기준확인 마크<sup>(2)</sup>, 23.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sup>(3)</sup>

- 주(2) 해당 표시사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3)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로 축약할 수 있음

### ②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필수 표시사항\*, △권장 표시사항
  - \* 예) 세정제(염산 또는 황산이 사용된 제품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 제외)
    -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표시

- (응급처치) △필수 표시사항\*, △권장 표시사항
  -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표시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20. 사용상 주의사항, 21. 응급처치

(생략) 다만, <u>중복</u>되는 <u>사용상 주의사항(응급처치) 문구는 생략</u>하거나 <u>유사한 문구를 조합</u>하여 표시<u>할 수 있으며</u>,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응급처치를) 위한 상세정보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① I. 공통 표시방법
    - (표시의 일반사항) 권장사항 규정 및 권장사항 이행시 소소한 인센티브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Ⅰ. 공통 표시방법
- 1. 표시의 일반사항
  - 마. <u>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부록 1에 따른 그림기호로 나타낸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u> 연계된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본다.

# - (표시 위치) 제품 겉면의 표시 방법\*

- \* 표시면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표1의 표시사항을 표시.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
  - ※ (표시면)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u>통상적으로</u>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시 제2조제8호)

<표1>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50 cm <sup>2</sup> ~100 cm <sup>2</sup>	<ul> <li>・품목</li> <li>・제품명</li> <li>・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li> <li>・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li> <li>・그림문자</li> <li>・주요물질</li> <li>・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li> <li>・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li> <li>・안전기준확인 마크</li> </ul>
50 cm <sup>2</sup> 미만	・품목 ・제품명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 - (표시 위치)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방법\*

-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
- \* 다음 아래와 같이 <u>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u>에는 별표 5에 따른 표시 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음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Ⅰ. 공통 표시방법
- 2. 표시 위치
- 가) 제품이 고형으로써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나)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이 훼손될 경우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수입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품목에 한함
- 다) 제품 사용 시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의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초 등의 제품
- 라)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기기의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되는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한함
- (활자 크기) 표시면의 면적 200cm 이상 → 8 포인트 이상 표시면의 면적 200cm 미만 → 6 포인트 이상

### ②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고시 [별표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1.품목, 2.제품명, 3.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4.제형, 5.제조연월, 6.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7.중량·용량·매수, 8.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9.액성(세정제품 및 세탁 제품에 한함), 10.표준사용량(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11.효과·효능(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12.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13.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14.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15.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16.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sup>(2)</sup>, 17.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sup>(2)</sup>, 18.신호어 및 그림문자<sup>(2)</sup>, 19. 사용방법(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20.사용상 주의사항, 21.응급처치, 22.안전기준확인 마크<sup>(2)</sup>, 23.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sup>(3)</sup>

- (7.중량·용량·매수) -----. 다만, 카트리지형 등 매수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중량·용량 대신 인쇄가능매수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 (10.표준사용량) -----. <u>희석해서 사용하는</u>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4.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 다만, 재생용 잉크·토너의 원료 유통업체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생용 잉크·토너의 재제조 및 재생업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원료 제조회사의 상호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6.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 어린이보호포장 , △가정용 제품이 아닌 경우 →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예,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카센터용", 순간접착제의 경우 "산업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
- (17.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해당 물질의 명칭을 표시

가. 주요물질 (예.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폴리다이메틸실록산)

제품에 <u>사용된</u>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1)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해당하는 물질이 향료일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향료(물질명)"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향료(대표물질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주요물질: 향료(d-리모넨 등)].

- 1)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대표 물질: 다만, 해당하는 물질이 물(정제수)인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명칭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 2)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대표 물질

나. 보존제 (예. 보존제: 에탄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u>사용된</u> 물질로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아밀신남알)

<u>표4의 물질(총 26종, 종전 규정比 변동없음)</u>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u>0.01% 이상 사용</u>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계면활성제 [예,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술폰산염(음이온계)]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물질 및 표5에 따른 계열을 "물질명(계열)"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물질 (예,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u>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이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이미 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 기타물질: 황산(산도조절제)].</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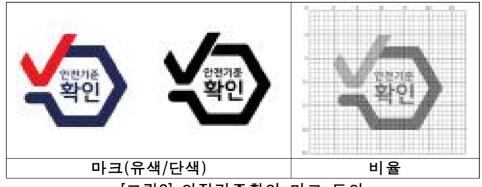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u>유해화학물질(</u>그 함량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유독물질의 지정고시」또는 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sup>(2)</sup>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2)

(중간 생략)

### 주(2)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의 물질 표시방법

- ① 안전기준 확인 신고 이후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확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신고를 한 제품 중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22.안전기준확인 마크)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기준확인 마크를 그림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2]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 기타

- □ 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에 따른 표시제한 문구의 적용례 반영(고시 부칙)
- 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시행규칙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문구"라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1. 무독성 하여야 한다.
- 1. 사람 ·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3. 무해성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렁으로 4. 인체·동물친화적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할 수 있다.
-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2. 환경·자연친화적

-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ㅇ (고시 부칙)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